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강제징수 관련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제118조에 의거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등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강제징수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06. 17.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



1. 건 명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강제징수 관련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보험료징수법 제32조,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6. 06. 17. ~ 2026. 07. 01.(15일간)
5.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지역협력과(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지역협력과 김철중(☎ 061-650-01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